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5.11.1. 시행)됨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장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과 마약예방재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0000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각 호”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14명”을 “18명”으로, “7명”을 “11명”으로 한다.

총리령 제18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6년 6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총리령 제19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7년 9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0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684”를 “686”으로, 일반직 계 “683”을 “685”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1”을 “112”로 하

고,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2 다음에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702”를 “704”로, 일반직 계 “701”을 “703”으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5”를 “11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2 다음에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96”을 각각 “901”로,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83”을 “84”로,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수의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102”를 “10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을 포함하며, 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포함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	인천광역시(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강화군은 제외한다),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하며, 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김포시는 제외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	--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u>7명</u>,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4명 및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 ----- -- <u>11명</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8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8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및 마약예방재활팀은 각각 <u>2026년 5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7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
· 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
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 제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
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
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식
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
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3명)으
로 본다.

총리령 제1986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7년 12월
31일-----.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 2028년 1월 1일 -----

-----.

총리령 제1986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 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명)은 <u>2027년 9월 30일</u>까지 존 속하며, <u>2027년 10월 1일</u>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 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명) 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u>2027년 12월 31일</u>----- ----- <u>2028년 1월 1일</u>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84</u>	• <u>686</u>	+2
일반직 계	• • <u>683</u>	• • <u>685</u>	+2
• •	• •	•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11</u>	<u>112</u>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 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	22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02</u>	• <u>704</u>	+2
일반직 계	• • <u>701</u>	• • <u>703</u>	+2
• •	• •	•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115</u>	<u>116</u>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 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2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보건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1	+1
--	--------------------	----------	-----------

[별표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96</u>	<u>901</u>	+5
일반직 계	<u>896</u>	<u>901</u>	+5
·	·	·	
·	·	·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 수의 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83</u>	<u>84</u>	+1
·	·	·	
행정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수의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u>102</u>	<u>106</u>	+4
·	·	·	
·	·	·	